

# [러시아]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 1. (인증) 러시아시장에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통합규정 도입

\* 출처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R 57022-2016 "유기농제품. 자율인증 절차 (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도입 목적은 유기농제품에 자율인증에 대한 단일규정을 정립하는데 있음
  - 현재 식품첨가물, 합성비료,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미사용 제품 표시 라벨링 및 인증서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GOST R 57022-2016 라벨링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 및 필수 검사항목을 통과했음을 인증함
- 본 기준은 유기농 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 대한 유기농제품 라벨링 및 유기농생산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No.834/2007 이행절차에 관한 조항과 함께 2008년 9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No.889/2008(2008년 9월 18일자 유럽연합 공식 통보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1999, REV. 1-2001)",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 기준들에 의거하여 개발됨
- 본 기준은 이전에 승인된 국가기준 GOST R 56104-2014 "유기식품. 용어와 정의", GOST R 56508-2015 "유기농제품. 생산·보관·운송 규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

### 2. (인증) 체리 및 양벚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

\* 출처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33801-2016 "신선 체리 및 양벚. 기술조건 (Fresh cherries and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 도입
- 본 기준은 신선한 형태로 공급 및 판매되는 재배품종 및 교잡종의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에 적용
  - 품질과 수확방법에 따라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기준은 체리 및 양벚의 상품품질관리 및 판매문제를 규제하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기준 UNECE standard FFV - 13:2010에 기초를 둠

- 본 기준은 1976년부터 시행되었던 2가지 기준 - GOST 21921-76 "신선 체리. 기술조건(Fresh cherries. Specifications)"과 GOST 21922-76 "신선 양벚. 기술조건(Fresh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을 대체할 것임
- GOST 33801-2016은 국가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이 기준을 채택하기로 승인함

### 3. (수입규제) 공공조달을 위해 허가가 제한되는 외국산 식품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No.832 (2016.8.22)

- 외국에서 생산된 일부 식품들은 공공조달이 제한됨
-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생산자 지원을 위해 일부 외국산 식품들은 공공조달에서 제한됨.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 필요 식품에만 적용되며, 상점, 소매체인, 상업적인 요식업체에 납품되는 식품공급, 상업적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제한 식품 목록을 승인함. 가공 및 저장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설육, 우유 및 유제품, 정미, 설탕, 소금 등이 목록에 포함됨
- 공공조달을 위한 구매 시, 주문자는 공급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2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외국(유라시아경제연합 제외)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음

#### < 공공조달 제한 외국산 식품 목록 >

경제활동 종류별 러시아 제품분류 코드 (OK 034-2014)	식품명
10.20.1	어류제품(신선, 냉장 또는 냉동)
10.20.2	기타 방식으로 제조 또는 저장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10.20.3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냉동, 가공 또는 저장처리)
10.84.30.120	식용의 증발염
10.84.30.130	요오드 첨가된 식용의 식탁염
10.11.11.110	쇠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1.120	송아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2	돼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1.20.110	소 식용설육(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31	소의 육(쇠고기, 송아지고기)(냉동,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1.32	돼지고기(냉동,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2.1	가금육(냉장, 어린이식품용 포함)
10.12.40.120	가금류의 식용설육(냉동)
10.51.2	우유 및 크림(건조, 승화시킨 것)
10.51.30.100	버터
10.51.30.110	버터
10.51.30.200	오일 페이스트
10.51.30.210	오일 페이스트
10.51.4, 10.51.40.120	치즈, 치즈제품, 커티지치즈 제외
10.51.51	우유 및 크림(응축 또는 설탕 첨가 또는 기타 감미료 첨가한 것, 건조하지 않은 것)
10.61.11.000	쌀(정미)
10.81.12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없는 고체 형태의 화학적으로 깨끗한 자당과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백설탕
10.81.13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있는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정제설탕; 메이플 슈거 및 메이플 시럽

#### 4. (수입규제) 제재제품 폐기 기간 2017년 말까지 연장

\* 출처 : 러시아정부 결의 No.782 (2016.8.10)

- 러시아정부는 금수조치 해당 식품 폐기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함
- 2014년 8월 러시아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국가들의 제품 수입을 제한함
  - 육류, 소시지, 어류, 해산물,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등이 금지됨
- 러시아의 대응조치 결과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는 연간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판매시장을 잃게 됨
- 2015년 8월 푸틴 대통령은 금지 상품 폐기에 관한 칙령에 서명함.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로 다량 들어오는 밀수품 반입을 감소시켜줌
- 일 년간 식물성제품 7.3천 톤과 동물성제품 228.6톤이 폐기됨

#### 5. (검역) 러시아 국경 검문소에서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 신규 규정 승인

\* 출처 : 러시아정부 결의 No.792 (2016.8.13)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검문소 국가검역식물위생관

리(감독) 규정 갱신

- 신규 규정은 2014년 7월 21일자 “식물검역” 연방법 No.206-FZ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 농업부가 준비함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에 대해 검문소에서 시행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동식물검역국과 지역동식물검역국, 세관기관이 수행함. 검문소에서 규제제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세관기관이 수행함
- 규제제품 반입 시에 세관에서 운송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변경되지 않음
- 정밀검사는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 대해 실시됨
-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한 육안검사 시, 검역대상(병해충)과 유사한 생물체, 병징 또는 검역대상(병해충)에 의한 규제제품 피해 표조가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실시됨

<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1) >

명칭	관세동맹 HS코드
<b>I.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b>	
학술연구용의 살아있는 응애, 선충, 곤충	of 0106 41 000, of 0106 49 000
인경, 괴경, 괴근, 구경,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뿌리(제1212호의 뿌리 제외)	0601
기타의 산 식물(뿌리 포함), 삽수, 접수	0602 (0602 90 100 0 제외)
절화와 꽃봉오리(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 신선한 것)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절화와 꽃봉오리(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 건조한 것)	of 0603 90 000 0
크리스마스용 나무	0604 20 200 0
침엽수 가지	0604 20 400 0
식물의 잎, 가지 및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 풀(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 신선한 것, 건조한 것이며, 더 이상	of 0604 20 900 0 of 0604 90 9100 0

1) 본 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에 의해 승인됨.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이후 문서에 기재된 ‘관세동맹’이라는 단어는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변경하고 있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	
감자(신선 또는 냉장)	0701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0702 00 000
양파, 쪽파, 마늘, 리크,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0703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Brassica속의 식용채소(신선 또는 냉장)	0704
상추(Lactuca sativa) 및 치커리(Cichorium spp.)(신선 또는 냉장)	0705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셀러리악, 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	0706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	0707 00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	0708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0709
스위트콘(Zea mays var. saccharata)(종자용)	0712 90 110 0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 불문)	0713
매니옥, 칩뿌리, 샬랩, 국아, 고구마,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와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건조한 것), 사교야자의 수	of 0714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 불문)	0801
기타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 불문)	0802
바나나(플랜틴 포함, 신선 또는 건조)	0803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버, 망고 및 망고스틴, 또는 가르시니아(신선 또는 건조)	0804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	0805
포도(신선 또는 건조)	0806
멜론(수박 포함)과 파파야(신선)	0807
사과, 배 및 마르멜로(신선)	0808
살구, 버찌 및 양벚, 복숭아(넥타린 포함), 자두 및 슬로우(신선)	0809
기타 과실(신선)	0810
건조한 과실(제0801호-제0806호에 해당하는 과실 제외)과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볶지 않은 커피(카페인 유무 여부 불문)	of 0901 11 000, of 0901 12 000
밀과 메슬린	1001
호밀	1002
보리	1003
귀리	1004
옥수수	1005
쌀	1006
수수	1007
메밀, 조 및 카나리시드; 기타의 곡물	1008
밀가루 또는 호밀가루	1101 00
기타 곡물의 곡분(밀가루 또는 호밀가루 제외)	1102
곡물의 분쇄물, 조분 및 펠리트	1103
기타 가공한 곡물(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1006호의 쌀 제외)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분말	1106 10 000 0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 불문)	1107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1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2
코프라	1203 00 000 0
아마 종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4 00
유채 또는 콜자의 종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5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6 00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1207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종자 제외)	1208
파종용의 종자, 과실 및 포자	1209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 또는 건조한 것,	1211 (1211 30 000 0,

원상 또는 절단한 것, 파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	1211 40 000 0 제외)
사탕무	1212 91
캐롭(carob)의 과실(종자 포함)	1212 92 00 0, 1212 99 410 0
살구, 복숭아(넥타린 포함) 또는 자두의 핵; 치커리뿌리(Cichorium intybus sativum 종)	of 1212 94 000 0, of 1212 99 950 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 절단, 분쇄 여부를 불문하며 압착한 것이고 펠리트 제외)	of 1213 00 000 0, of 1401 90 000 0
스워드, 맹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이 아닌 것)	of 1214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생 것 또는 볶은 것)	1801 00 000 0
코코아두의 각과 피,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2 00 000 0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또는 기타 가공법으로 생기는 것에 한함, 펠리트상이 아닌 것)	of 2302
대두유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펠리트상이 아닌 것)	of 2304 00 000
낙화생유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펠리트상이 아닌 것)	of 2305 00 000 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유지의 추출 시에 생긴 것,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펠리트상이 아닌 것)	of 2306
토양	of 2530 90 000 0
토탄(토탄 찌꺼기 포함,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2703 00 000 0
오직 학술연구용의 살아있는 식물병원성 박테리아, 세균	of 3002 90 500 0, of 3002 90 900 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 00 000 0
떨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	4401 10 000
침엽수류의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 21 000 0
활엽수류의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4401 22 000 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 스크랩(nonsinterd)(응결하지 아니한 것)	of 4401 39
원목(껍질 또는 변재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의 여부 불문)	of 4403

부 불문)	(4403 10 000 제외)
후프우드·쪄갠 말뚝, 뽀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제외),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 반가공과 힘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4404
목재 껍질	of 1404 90 000 0, of 4401 39 900 0
철도 및 전차용 받침목(주약처리하지 않은 것)	4406 10 000 0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쪄갠 것,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4407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포함)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는 여부 불문)	of 4409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בל드럼, 나무로 만든 팻릿·박스팻릿, 기타 깔판류와 나무로 만든 팻릿칼러(개별 상품이거나 따로 신고하는 것에 한함)	of 4415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418 40 000 0
동물학, 식물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of 9705 00 000 0
<b>II.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b>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of 0505 90 000 0
뼈와 혼코어의 분과 웨이스트	of 0506 90 000 0
건조한 양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0712 20 000 0
건조한 버섯류(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0712 31 000 0, 0712 32 000 0, 0712 33 000 0, 0712 39 000 0
건조한 기타의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0712 90 (0712 90 110 0 제외)

외)	외)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은 커피(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of 0901 21 000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of 0901 22 000
커피의 각과 피	0901 90 100 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0902 10 000, 0902 20 000 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of 0902 30 000, 0902 40 000 0
마태 또는 파라과이 차(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0903 00 000 0
향신료(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of 0904 - 0910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를 들어, 대·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것 제외	of 1401
면린터	1404 20 000 0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를 들어,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 염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	of 1404 90 000 0
타피오카(펠리트 제외)	of 1903 00 000 0
혼합조미료	of 2103 90 900 9
도토리 및 마로니에열매	of 2308 00 400 0
동물사료용 조제품(염화콜린 함유, 유기로 이루어진 것)	of 2309 90 950 0
기타 동물사료용 조제품(펠리트가 아닌 것)	of 2309 90 990 0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1
헤나 및 블랙헤어염료(소비자포장용으로 정량포장된 것 제외)	of 3203 00
소(버팔로 포함)와 마속동물의 원피,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관세동맹 관세법의 41류에 대한 주 1b 혹은 1v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함	of 4101, of 4102, of 4103
목제의 통·배럴·배트·텃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판 포함)(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416 00 000 0
창문, 발코니문, 창문틀(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of 4418 10

것 제외)	
문, 문틀 및 문지방(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418 20
지붕이는 판자(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418 50 000 0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매트류 및 발(식물성 재료의 것에 한함)(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601
농세공품·지조세공물 및 기타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에 한한다)(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과 수세미 제품(안료, 소독제, 방부제, 기타 보존료로 처리한 것 제외)	of 4602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천공한 것인지의 여부 불문)	4808 10 000 0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골판지)로 만든 상자류	of 4819 10 000 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함)	5001 00 000 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	5003 00 000 0
세척하지 않은 깎은 양모(플리스와시한 양모 포함, 카드(card) 또는 코움(comb)한 것은 제외)	5101 11 000 0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	5102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탄화 처리한 것은 제외)	5103 10 100 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은 제외)	5201 00
면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5202
아마(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5301
대마(Cannabis sativa L.)(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5302
황마와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아마·대마 및 라미를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이들 섬유의 토우와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5303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또는 Musa textilis Nee),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305 00 000 0

다) 및 이들 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 포함)	
--	--

※ 참조 :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은 식물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